



혼인외 출생자의 인지 및 법률문제

최은순/변호사 www.womenlaw.co.kr

22 살인 갑돌이는 아버지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 갑돌이의 어머니 이갑순은 젊은 시절 한 때 유흥업소에 종사하였는데, 그 때 만난 유부남인 김놀부를 사귀게 되었다. 그런데 둘 사이에 태어난 것이 갑돌이다. 그런데, 김놀부는 이갑순이 낳은 갑돌이를 부담스러워하고 미워하게 되었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김놀부와 이갑순은 헤어지기에 이르렀다. 이갑순은 현재 박흥부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갑돌이 또한 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갑돌이는 현재 박흥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나 늘 생부(生父)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성년이 된 갑돌이는 아버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여 어머니인 이갑순으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듣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호적을 확인해 보았더니 어머니인 이갑순의 호적에 올라있고, 아버지란은 비어 있었다. 갑돌이는 아버지인 김놀부를 만나보기 전에 자신의 법적인 지위와 함께 자신의 출현으로 인해 그의 어머니인 이갑순이 처할 곤경이 두렵기도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담을 하기에 이르렀다.

첫째, 갑돌이가 생부인 김놀부에게 나타나게 되면 김놀부의 부인이 자신의 남편인 김놀부와 갑돌이의 어머니 이갑순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갑돌이가 김놀부의 친자임을 확인하고 갑돌이의 호적을 생부인 김놀부 밑으로 옮기고자 한다. 그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갑돌이가 김놀부를 찾아가 자신을 김놀부의 아들임을 인지(認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해 보자. 그런 경우 김놀부가 자발적으로 이를 인지하여 호

적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인지신고를 하게 되면 갑돌이는 김놀부의 혼인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갑돌이의 호적은 김놀부의 호적에 오르게 되고 갑돌이의 성도 이갑순이 아닌 김갑돌로 바뀌게 된다.

셋째, 호적정정 이후에 만약, 생부인 김놀부가 사망한다면 김놀부와 김놀부의 처와의 사이에 태어난 혼인중의 출생자들과 갑돌이의 호주승계 순위는 누가 우선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호주승계는 김놀부의 직계비속 남자가 1순위인데 그 중에서도 혼인중의 출생자가 우선하도록 되어 있어 김놀부와 김놀부의 처사이에 적자인 아들이 있다면 그가 갑돌이보다 우선하여 호주승계가 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그 둘 사이에 딸만 있다면 갑돌이가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

넷째, 재산상속의 경우에 적자와 갑돌이 사이에 차별은 없는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이 경우에 김놀부가 사망 전에 유언 등으로 적자들에게만 재산상속을 가능케 하도록 할 수도 있으나 유언 등이 없는 경우의 법정 상속은 적자와 갑돌이 사이에 차별은 없다. 김놀부가 유언 등의 방법으로 갑돌이에게 아무런 재산을 주지 않은 경우라면 갑돌이는 자신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침해를 이유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일정 정도의 자신의 상속분 유지는 가능하다.

다섯째, 현재 갑돌이의 어머니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박흥부와 갑돌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다. 갑돌이의 어머니와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박흥부는 갑돌이의 사실상 계부일 뿐 현행법상 계부와 계모에 대해서는 친족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PPFK**